

◎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47호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청주영덕선 95.1k 인근, 해제)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위치	⑥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주요 통과지	⑩총연장 (km)
해제	고속 국도	제30호	상주영덕선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산41-14	-66㎡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	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:

-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시 편입된 부지였으나, 유지관리상 불필요하고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편입제외 및 원토지(분할전)와의 합병을 요구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척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:

- 2022년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변경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1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	산41-14	임	66	-66	단양우씨문회 공파선회문중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751	

5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
연번	노선명	소재지	변경사항	비고
30	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고속도로	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	도로구역(변경)결정	
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가.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 에서 열람가능

나. 열람장소

- 의성군청 민원과

(주소 :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, 전화번호 : 054-830-6381)

- 한국도로공사 도로처

(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, 전화번호 : 054-811-2526)

-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

(주소 :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359, 전화번호 : 054-714-6940)

다. 열람기간 : 사업기간 내